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64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윤준병 · 박민규 · 문대림
서미화 · 권칠승 · 이춘석
안호영 · 이원택 · 곽상언
서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들의 감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미술 작품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미관을 증진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7장 신설 등).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미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증진”을 “증진 등”으로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공공미술 작품의 보호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관리 지원 등 공공미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 이동, 제거,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9호 중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를 “공공미술”로 한다.

제7장(제4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42조(과태료) ①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 이동, 제거,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5조의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u>증진</u>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미술”이란 대중에게 <u>공 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u>증진 등</u> <u>제15조의5(공공미술 작품의 보호</u> <u>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u>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u> <u>하기 위하여 공공미술 작품의</u> <u>설치·관리 지원 등 공공미술</u> <u>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u> <u>련하여야 한다.</u> ② <u>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을</u> <u>손괴, 이동, 제거, 은닉, 그 밖</u> <u>의 방법으로 공공미술 작품의</u> <u>가치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u> <u>다.</u> ③ <u>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에</u> <u>대하여 공공연하게 비방·모욕</u> <u>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u>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8. (생략)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
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생략)

<신설>

<신설>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미술 작품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1. ~ 8. (현행과 같음)

9. 공공미술-----

10. (현행과 같음)

제7장 벌칙

제42조(과태료) ① 제15조의5제2
항을 위반하여 공공미술 작품
을 손괴, 이동, 제거,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미술 작품
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② 제15조의5조제3항을 위반하
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하여 공
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
람을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